
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

2019. 11.



방송통신위원회

목 차

I. 제정 목적	1
II.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요	1
1.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의	
2. 법정 편성 방송사업자	
3.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	
III.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	2
1. 신청 대상	
2. 신청 요건	
3. 신청 절차	
4. 방송채택료	
5. 운영 조건	
6. 시행일	
7. 재검토 기한	
[부록1] 참여프로그램 방송신청서 표준양식	6
[부록2] 시청자·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심사평가 표준양식	8
[부록3]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절차	9
[부록4] 관련 법령	10

I

제정 목적

- 이 가이드라인은 ‘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’에 대한 신청요건, 신청절차, 채택료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더 많은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의 공익성·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

II

시청자참여프로그램 개요

1.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정의

- ‘시청자참여프로그램’^{*}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·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

※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예시 : 한국방송공사 ‘열린 채널’, 마포FM(공동체라디오) ‘마포수다방’, 아름방송 ‘ABN 시청자 열린 세상’ 등

2. 법정 편성 방송사업자

- 한국방송공사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

※ 방송법 제69조(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)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.
⑩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
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

※ 방송법 제70조(채널의 구성과 운용)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.

3.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

- '시청자참여프로그램'을 편성·방영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방송채택료*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
* '시청자참여프로그램'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영을 요청한 시청자에게 방송사업자가 이를 편성·방영한 후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

Ⅲ

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

1. 신청 대상

- 방송법 제2조의3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, 공동체라디오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

2. 신청 요건

- (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정기편성)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독립적 정기편성을 원칙으로 하나, 방송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내 개별코너 형식으로 편성도 가능

- (방송채택료 일부 자체부담)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'방송채택료'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나머지 방송채택료(자체부담금)는 방송사업자가 지급 필요

※ 자체부담금은 전체 방송채택료의 40% 이하로 설정

- (운영위원회 구성)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운영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3인 이상 외부위원을 포함 총 5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

※ 외부위원은 방송, 교육, 법률 등의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한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구성·운영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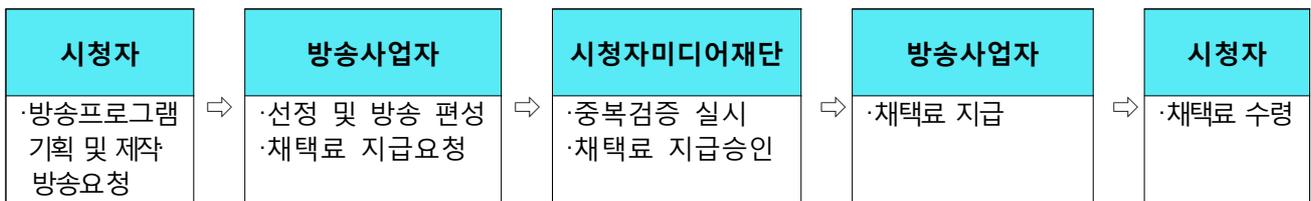
3. 신청 절차

- (신청시기) 매년 초(1~2월경)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 제출
- (지원대상 선정) 미디어, 법률,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'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'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
- (지원금 지급) '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'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연 2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
- (지원을 우대) 편성 목표시간 대비 실적, 집행률, 활성화 노력도, 중간 및 종합평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 우수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우대(예 : 60% → 65% 상향)

※ 신규 참여 방송사업자의 경우, 첫 해에 한하여 100% 지원(자체부담금 면제)

4. 방송채택료 지급

<방송채택료 지급절차>



- (투명한 채택료 지급)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채택료 지급 시 영수증 등 관계 서류를 발급할 것을 권고함
- (연간 지급 채택료 상한) 더 많은 시청자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1인 또는 1개 단체의 연간 누적 채택료 수령액이 600만원 초과 시,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

- **(신청 자격제한)** 일반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방송신청은 가능하나,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
- **(중복지원 방지)** 정부의 예산지원*으로 제작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은 가능하나,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
 - *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지원 및 보조금 등을 통한 간접지원 포함
- **(프로그램내용 과다중복 방지)** 기 방영된 프로그램과 동일한 화면, 내레이션, 인터뷰 등이 전체 분량의 50% 이상인 경우,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
- **(동일 프로그램 중복방송)** 동일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하나의 방송사업자를 통해 여러 번 방송된 경우,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는 최초 방영분에 한하여 지급함
- **(다수 방송사를 통한 중복방송)** 동일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다수의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된 경우,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는 최초 방영분에 한하여 지급함

※ 기금의 경우 재원이 한정되어 채택료 지원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, 방송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시청자에게 채택료를 지급할 것을 권장함

5. 운영 조건

- **(사업의 성실수행)**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심사 조건 등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함
 - ※ 당해 연도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업을 중단한 경우, 다음해 지원사업자 선정 시 자체부담금 비율 상향, 일정기간 사업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**(관련법령 등 준수)**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,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함
- **(편성시간대)**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더 많은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
- **(시청자를 위한 안내문 게시)**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에 신청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더 많은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**(프로그램 심사결과 통보)**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선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시청자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함
 - ※ 심사결과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함
- **(제작지원 표시)**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는 ‘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’에 따라 ‘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’임을 표시하도록 권고함
 - ※ 다음 안내문을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후에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3초 이상 표기

본 방송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·지원되고 있습니다.

6. 시행일

-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

7. 재검토 기한

-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(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

부록 1 참여프로그램 방송신청서 표준양식

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신청서 표준양식

신청작품명			
장 르	()다큐멘터리 ()단편영화 ()애니메이션 ()뮤직비디오 ()기타:		
작품주제	()시사 ()문화 ()행사 ()건강 ()환경 ()교육 ()소외계층 ()기타:		
제작연도	년 월	작품분량:	분 초
제작포맷	() HD ()UHD () SD		
제작스텝	연출	구성	촬영 성우
사용자막	()기본서체 ()기타서체 *저작권 문제 방지를 위해 디자인서체 사용에 주의해주시시오		
방송신청인	이름(단체명):		생년월일:
	연락처 :		
	E-mail:		
	주소:		※ E-mail이 없는 경우만 작성
신청 프로그램 개요			
기획의도			
주요내용			
기타 사항			
지원금 수령여부	① 본 신청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을 통해 방송 여부 : 없다() / 있다() → 있는 경우 상세 내용 기술 : ② 본 신청프로그램 제작 시에 정부(지자체 포함)의 지원 여부 : 없다() / 있다() → 있는 경우 상세 내용 기술 : ③ 신청인 명의로 올해 수령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채택료 수령 내역 → 제목, 프로그램명, 일시, 금액(타방송사 내역 포함)		

※ 채택료는 방송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만 지급(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)

년 월 일

방송신청인 : (인)

○○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

② 청취자참여프로그램 방송신청서 표준양식

작 품 명						
장 르	()라디오드라마 ()오디오북 ()토크 ()음악 ()시사 ()기타:					
작품주제	()시사 ()문화 ()행사 ()건강 ()환경 ()교육 ()소외계층 ()기타					
제작연도	년 월			작품분량:	분 초	
제작스텝	연출		구성		촬영	성우
방송신청인	이름(단체명):			생년월일:		
	연락처 :					
	E-mail:					
	주소:			※ E-mail이 없는 경우만 작성		
신청 프로그램 개요						
기획의도						
주요내용						
기타 사항						
지원금 수령여부	① 본 신청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을 통해 방송 여부 : 없다() / 있다() → 있는 경우 상세 내용 기술 : ② 본 신청프로그램 제작 시에 정부(지자체 포함)의 지원 여부 : 없다() / 있다() → 있는 경우 상세 내용 기술 : ③ 신청인 명의로 올해 수령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채택료 수령 내역 → 제목, 프로그램명, 일시, 금액(타방송사 내역 포함)					

※ 채택료는 방송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만 지급(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)

년 월 일

방송신청인 :

(인)

○○방송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

부록 3

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절차 (민간경상보조사업)



- ◎ **방송법 제3조(시청자의 권익보호)**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◎ **방송법 제69조(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)**
 -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**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**하여야 한다.

 -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**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**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

- ◎ **방송법 제70조(채널의 구성과 운용)**
 -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**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**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.

- ◎ **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(기금의 용도)**
 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.
 - 7.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

- ◎ **방송법 시행령 제51조(시청자참여프로그램)**
 - ① 방송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**매월 100분 이상**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- ◎ **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(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)**
 - ① 방송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참여 프로그램을 **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** 편성하여야 한다.

- ◎ **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(시청자참여프로그램)**
 -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.
 1. 시청자가 직접 기획·제작한 방송프로그램
 2.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

- ◎ **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6조(기금 지원사업 표기)**

기금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결과물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임을 별표 2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.

 3. 기타 주무부서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(장애인 방송,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등 포함) 등